■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1. 23.>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소유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방시설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공한 소방시설			
소방시설 도급인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착공일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도급인·건축사 귀하

첨부서류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